사단법인 더불어사는사람들 정관

2011.08.30. 개정
2012.05.22. 개정
2013.04.22. 개정
2014.10.22. 개정
2015.05.01. 개정
2020.05.21. 개정
2022.05.27.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더불어사는사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 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포함된 대상자에게 자활을 위한 창업지원 및일자리 취업교육 지원등을 통한 자기고용창출로 인하여 수익발생으로 가정 생활안정 도모 및 더불어사는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예비창업자 및 기존 창업자에 대한 창업을 위한 지원 및 제반사업.
2.일자리 취업교육사업.
3.재무상담사업교육 및 홍보,컨설팅사업.
4.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고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 (후원금,출자금) 및 자활사업과 연구 용역사업.
5.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의자격)

①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본회의 회원은 준회원·정회원·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③본회의 회원자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 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②준회원·특별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8 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이사장1인

2.이사5인~15인(이사장,부이사장,상임대표를 포함한다)

3.감사3인 이내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연임 할 수 있다.
이사장은 단임으로 하고(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하며, 이사·감사·정회원이 될 수 없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선출이 늦어질 경우 현재임원이 임원선출시까지 임원의 임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본회의 운영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이사장,이사 중 연장자순 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문서또는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홈페이지)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개의 및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정회원15명증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개의정족수에 포함)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않는 경우는 30일 이내에 총회을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서업계획의 승인
6. 기타중요 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분기별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등을 명기하여, 문서또는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홈페이지)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니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제16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 할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위원회)

법인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기타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운영한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의 공개)
①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국)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칙

제40조(법인해산)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회가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①2021년 4월19일에 취임한 임원전원은 2022년 4월18일까지 전원임기가 종료된다.

제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4 조(발기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별첨과 같이 기명날인 하다.

부 칙(2012.05.2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4.2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2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5.0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5.2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5.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명날인)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참석자 전원이 기명

의 장 배순호

부이사장 소병기 상임대표 이창호 이사 이승열

이사 장석기 이사 강영종

감사 이수용 감사 배원기